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사형제 폐지 및 종신형 도입 〉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80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4
IV .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체계	5
2. 사형제도의 연혁 및 현황	6
3. 주요 조문별 검토	11
4. 종합의견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지원의원 등 65인
2. 발 의 일: 2024. 11. 29.
3. 회 부 일: 2024. 12. 2.

II.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임. 사형이 빈번하게 이뤄졌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권 차원의 조작 또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러 사건이 발생해왔음. 한강 인도교 폭파, 진보당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등이 그 예시임. 이러한 사법살인의 경우,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 등을 통해 무죄판정을 받더라도 이미 집행되어버린 사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우리 헌법은 이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인 “생명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국민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정벌을 이유로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국민에 의한 살인행

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으면서 국가에 의한 인간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것임.

또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UN은 1988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통계적 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결론낸 바 있음.

한편 우리 정부는 200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및 기타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약 및 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한 바 있어, 본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를 비롯한 47개의 유럽국가 및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로부터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 이것은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방증이며, 이를 위해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세계적 인권운동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최근 보고서에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아울러 동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 존치국의 수는 16개국으로까지 줄어들었으며, 흉악·강력사범에 대한 징벌로 이미 가석방없는 종신형 등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

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 대법원은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치 요청에 대해 “사형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특히 우리 사법부는 해당 의견서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아 폐지하는 추세”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에서 추진한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과거 국회에서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었으므로, 우리 입법부 또한 국제사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인도적, 반인권적인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명백히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에서 “종신행”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함(안 제2조).
- 나. 「형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행으로 대체함(안 제3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체계

- 1) 제정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범죄자의 인권 보호 및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국가형벌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범죄자의 인권 보호 및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국가형벌체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정안은 3개의 본칙 조문[제1조(목적), 제2조(종신형의 정의와 종류), 제3조(사형의 종신형 대체)]과 3개의 부칙 조문[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	내 용
<본칙>	
제1조	목적
제2조	종신형의 정의와 종류
제3조	사형의 종신형 대체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2. 사형제도의 연혁 및 현황

가. 사형제도의 연혁

- 1) 사형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형벌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형벌임.¹⁾ 헌법 제110조제4항 단서²⁾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 단심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외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사형제도를 인정함을 간접적으로 전제하고 있음. 사형의 집행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교수형,³⁾ 군인·군무원 등에 대해서는 총살형⁴⁾에 의함.
- 2) 사형제도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 및 고조선의 8조법 등에서 규정되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음.
- 3)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임.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베카리아(C. Beccaria)가 1764년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이후 그 존폐 논란이 치열하게 이어져 왔고, 위하(威嚇)와 보복 목적의 형벌 집행이 점차 교화와 개선 목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음.

1)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2) 「헌법」 제110조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접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4)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나.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

1)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된 범죄를 규정한 법률은 「형법」,⁵⁾ 「군형법」,⁶⁾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⁸⁾ 등 약 26개의 법률이 있고,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도 「형법」 제93조 여적죄⁹⁾ 및 「군형법」 제5조제1호 반란수괴죄 등 13개에 달함.¹⁰⁾

2)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명하고(「형사소송법」 제463조),¹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위 6개월에 포함되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465조).¹²⁾ 구체적인 사형 집행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¹³⁾

3) 우리나라는 1997. 12. 30.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5) 「형법」 내란죄(제87조제1호·제2호),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살인죄(제250조) 등

6) 「군형법」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등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1항제2호 등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3항 등

9)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0) 「형법」 제93조(여적) 및 「군형법」 제5조제1호(반란 수괴)·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제13조제1항(적을 위하여 간첩)·제18조(불법 전투 개시)·제19조(불법 전투 계속)·제22조(항복)·제23조(부대 인솔 도피)·제24조제1호(적전 직무유기)·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제45조제1호(집단 항명 수괴)·제84조(전지 강간)

11)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12) 「형사소송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사형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임. 2024. 12. 30. 기준으로 사형확정판결을 받고 집행대기 중인 자는 59명임(법무부 소관 55명, 군교도소 소관 4명).¹⁴⁾

4) 헌법재판소는 1996년¹⁵⁾과 2010년¹⁶⁾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1996년에는 위헌의견이 2명(합헌의견 7명), 2010년에는 위헌의견이 4명(합헌의견 5명)으로 위헌의견이 늘었음.

5)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0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국가인권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해 권고하였음.

6)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인 1999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는데, 구체적인 발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사형폐지 법안 발의 경과 >

14) 법무부 교정본부 및 국방부 의견.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것은 2016. 2. 19.이 마지막임.

15)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16)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발의일	법안명	발의자	대체형	처리결과
15대	1999. 1. 27.	사형 폐지 특별법안	유재건의원 등 91인	무기징역	임기만료 폐기 (소위 미심사)
16대	2001. 10. 30.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정대철의원 등 63인	무기징역 (가석방 제한 가능)	임기만료 폐기 (소위 미심사)
17대	2004. 1. 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유인태의원 등 175인	절대적 종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18대	2008. 9. 12.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박선영의원 등 39인	절대적 종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2009. 10. 8.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김부겸의원 등 53인	절대적 종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2010. 11. 22.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주성영의원 등 10인	절대적 종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19대	2015. 7. 6.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유인태의원 등 172인	절대적 종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20대	2019. 10. 10.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등 75인	절대적 종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미심사)
21대	2021. 10. 8.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등 30인	절대적 종신형	임기만료 폐기 (미상정)

7) 사형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 사형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65.2%로 나타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서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묻는 결과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비율은 4.4%, 향후 폐지는 15.9%로 폐지의견이 낮았지만,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사형제도 폐지 동의 비율이 66.9%에 이르렀음.

다.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1) 2025년 6월 기준으로, 프랑스(1981년)¹⁷⁾ · 독일(1949년)¹⁸⁾ · 영국

17) 1981. 10. 9. 법률 제81-908호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법률(Loi n° 81-908 du 9 octobre 1981 portant

(1965년)¹⁹⁾ 등 113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중국·일본·미국 등 54개 국가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브라질, 이스라엘 등 9개 국가는 전쟁 중 범죄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러시아 등 23개 국가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²⁰⁾

2) 즉, 전 세계 3분의 2를 넘는 국가가 사형제 폐지국가(실질적 사형폐지국 포함)에 속하고, 일본·미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OECD 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뉴욕주 등 23개 주는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조지아주 등 27개 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중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음.²¹⁾

abolition de la peine de mort)

제1조 사형은 폐지한다.

제3조 사형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서 사형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범죄의 성격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된다.

18) 1949. 5. 16. 독일 기본법

제102조 사형은 폐지된다.

19) 1965. 11. 8. 모살죄(사형폐지)법 [Murder (Abolition of Death Penalty) Act 1965]으로 잠정적으로 5년간 일정한 중대 모살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하고, 1969년 항구적으로 사형폐지를 확정하는 의회의 의결에 이름(한영수 등,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p. 80)

제1조(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 (1) 살인으로 인해 누구도 사형을 받지 아니하며,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아래 (5)에 따라 무기징역에 처한다.

20)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국제엠네스티) 홈페이지 자료(<https://www.amnesty.org/en/what-we-do/death-penalty/#numbersofdeathsentencesandexecutionseachyear>, 2025년 6월 기준)

21) 미국 비영리기관인 DPIC(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사형정보센터)의 홈페이지 자료(<https://deathpenaltyinfo.org/state-and-federal-info/state-by-state>, 2025년 6월 기준)

3. 주요 조문별 검토

제정안은 제2조에서 종신형을 정의하고, 제3조에서 사형제를 폐지하여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체계인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우선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함.

가. 사형의 종신형 대체(안 제3조)

- 1) 안 제3조는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조(사형의 종신형 대체)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 2) 사형제도에 대해서 존치론과 폐지론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은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박탈하는 것일지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²²⁾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간

22)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둘째, 사형제도가 범죄 위하력이 있어 흉악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봄. 사형제도는 죄질이 나쁜 흉악범 등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흉악범죄 등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은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봄.

셋째,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이 부재함. 사형제를 가석방·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방안이 주장되고 있으나,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오히려 수형자에게 무한의 고통을 가하여 인권존중정신에 반할 소지가 있고, 일반적 정의관념의 측면에서 또는 일반예방적 목적의 측면에서 사형제도와 동등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형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잔인한 형으로 생각되는 측면도 있어서 ‘덜 기본권 침해적인 대체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임.²³⁾ 또한, 종신형 수형자 수용을 위해서 막대한 시설·예산 부담이 초래된다는 문제 등이 있음.

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23)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재판관 송두환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감형, 사면 및 가석방이 모두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제도로써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이 주장되고 있기도 하나,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일반적 정의관념의 측면에서 또는 일반예방적 목적의 측면에서 사형제도와 동등한 수단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형에 버금가거나 또는 그보다 더 잔인한 형이 아닌가 생각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로써 ‘덜 기본권 침해적인 대체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사형제도 폐지론

이에 반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위헌임.²⁴⁾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 박탈을 의미하므로,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고,²⁵⁾ 설령 생명권을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인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하여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둘째, 사형제도는 형벌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범죄예방의 위하력도 미흡하다는 입장임.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에 대한 응보에서 교화로 변화하여 왔는데, 교화와 개선을 포기한 사형제도는 형벌 목적에 상치된다는 것임. 또한, 사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는 학문적 가설일 뿐 입증되지 않았고, 사형 대상이 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에게는 사형제도의 위하력이 미약하다고 봄.

24)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재판관 김진우 반대의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25)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권은 각 개인에게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개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본질적인 부분을 그렇지 않은 부분과 구분하여 상정할 수 없다. 결국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 박탈을 의미하므로,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생명의 박탈은 곧 신체의 박탈이므로 사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사형은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결과를 돌이킬 수 없어 오판으로 인한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오고,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할지라도 오판 우려가 있음.

3) 결론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오랜 기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사항으로, 위와 같은 찬반론의 논거들을 감안하여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기능 및 해외 입법례 등의 고려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나. 종신형의 정의 및 종류(안 제2조)

1) 안 제2조는 “종신형”을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형법」에 따른 가석방을 할 수 없는 형”으로 정의하면서,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로 나눈다.

제 정 안
제2조(종신형의 정의와 종류) ①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형법」에 따른 가석방을 할 수 없는 형을 말한다. ② 종신형은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로 나눈다.

2) 현행 형법상 무기형은 무기징역형과 무기금고형으로 나뉘고,²⁶⁾

26)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무기형 집행 중에 있는 자가 20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하고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음.²⁷⁾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시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형의 계속적 집행을 요구하는지는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²⁸⁾ 흉악범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가석방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형사적 정의감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에 배치될 수 있음. 또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편의주의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현행 형법상의 무기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²⁹⁾

3)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 등이 제시되고 있음.³⁰⁾

가)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서, 수형자가

27)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29)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p.228.

30)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의 종신형 제도 운영 현황

유형	국가
상대적 종신형(가석방 가능)	독일, 스페인 등 23개국
절대적 종신형(가석방 불가)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몰타 4개국
상대적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예외적 가석방 제한) 병존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헝가리,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11개국
종신형 제도 없음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체코,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9개국

(자료: 김대근·이덕안·권지혜, 사형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pp.308~313)

자연사하기 전까지는 영구히 수감하도록 하는 것임.³¹⁾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는 i) 사형제도를 대체하여 생명을 보장할 수 있고, 사형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형집행 현실에서 사형 선고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동일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ii) 신체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하고 구금하므로 수형자의 인격 박탈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가 될 수 있고,³²⁾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³³⁾과 배치될 수 있어 사형제보다 더욱 잔인한 형벌이 될 수 있음.³⁴⁾³⁵⁾

31) 2023. 10. 31. 정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여 무기형의 유형에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의 형벌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36호)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됨.

32) ①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에서 “사형에 비하면 절대적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 종신형 역시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에 못지 않은 형벌이고, 수형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②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45, 187(1977)]는 석방의 전망이 없는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이정념·이건호, 사형제도 존폐와 개선에 관한 논의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0. 3. 4.)

③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는 여러 사건에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벌을 금지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심현우, 캐나다에서의 ‘현실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대한 위헌결정, 아주법학 제17권제2호, p.246) 다만,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2014년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감형권 보장 장치가 있으므로 자국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부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연민의 사유’와 같은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2017년 영국 항소법원의 판단을 유럽인권재판소가 받아들임에 따라 영국에서 종신복역명령 부과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되었음(김광현, 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 NARS현안분석 2023. 10. 19. 제301호, 국회입법조사처, p5)

④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캐나다 형법 제745.51조가 ‘현실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면서, 캐나다 헌장 제12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함.(심현우, 앞의 논문, p.1)

⑤ 미국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수정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은 아직 없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 존재하고 있음. 예컨대 Solem v. Helm 사건[103 S. Ct. 3001 (1983)]에서, 연방대법원은 범행과 형벌 간의 비례성에 반하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양형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이라고 판시한바 있음.(최대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과 그 정당성 고찰, 경희법학 제58권제3호, p.20)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4)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연세대 법학연구 제17권제3호, p.142

35) 독일의 경우, 1949년 사형폐지 당시에는 대체형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하였으나,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도 근본적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종신형의 집

참고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 도입 시
그 보완을 위해서 특별감형제도³⁶⁾ 마련을 제안한 바 있음.³⁷⁾

행을 중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 아래에서 종신형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임무'라며 위헌선언을 하여 1981년 상대적 종신형으로 전환하였음.

- 36) 유럽인권재판소의 영국의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벌을 금지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후 2014년 영국 항소법원이 **감형권 보장 장치**가 있으므로 자국의 가석방없는 종신형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2017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으며, 2014년 이후 영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형을 재검토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5~10년에 1회, 가석방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김대근·이덕인·권지혜, 앞의 논문, p.223)

- 37) 김광현, 앞의 글, pp. 19, 20

<일본변호사연합회,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형 제도 설계에 관한 제언」>

주제	내용	세부사항
종신구금형의 창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을 대신하는 최고형으로서 종신구금형을 창설	사형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해를 이루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형벌로 박탈하는 제도로, 오판을 돌이킬 수 없고 형벌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일치하지 않음.
특별감형절차의 마련	특별감형절차의 필요성	절대적 종신형의 부과는 인권의 관점에서 비인도적이므로 예외적으로 감형된 형벌(무기형)의 집행과정에서 가석방을 하도록 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함. 사면제도는 사법권이 확정한 국가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권의 작용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이며, 정치성이나 자의성 배제라는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
	새로운 법률의 형식으로 마련(「종신구금형의 감형절차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의 개정 또한 검토해볼 수 있으나, 사형제도 폐지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개정의 효율성을 고려함.
	담당기관	특별감형절차는 법원(재판소)이 행한 판결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 또한 법원이 책임지고 해야 하며,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방법 또한 구상해 볼 수 있음.
	필요기간	필요기간은 15년 또는 20년으로 하며, 이는 무기형으로 감형된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 기간을 감형시점부터 다시 기산하기 때문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110조제3항은 종신구금형에 대해 25년 후 재심사가 실시되도록 하고 있어 필요기간 15년에 가석방 최소연한 10년을 더하면 국제규정에 부합함. 그러나 25년의 자유구속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대해서는 유기구금의 최장기간(30년)보다 단기간에 가석방 가능성이 나타나 사형폐지의 대체형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20년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만약 특별감형신청 필요기간을 25년이나 30년으로 할 경우 가석방 필요 복역기간 10년을 더하면 35년이나 40년이 되어 사실상 가석방 가능성이 없다고 보임.
	판단요소	특별감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개선행실이 인정되어야 함. 수형자의 갱생 외에 그 수형자가 일으킨 사건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나 그 후의 사회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가 문제 되는데, 이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함.
	자료수집	형사시설의 장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수형자 본인이나 그 가족, 피해자 유족 등에게도 필요에 따라 판단자료의 제출권한을 인정해야 함. 종신구금형 수형자의 심신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감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함.
	신청권자	종신구금형 수형자 본인과 함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종신구금형 수형자의 배우자 및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형사시설의 장 및 검찰관(검사)도 검토하여야 함. 종신구금형 수형자 본인에게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해석상 당연하고,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신청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서,³⁸⁾ 가석방이 가능한 최소 복역기간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데 20년, 25년, 30년 등이 거론되고 있음.³⁹⁾

참고로, 우리 「형법」에서는 무기징역에 대한 가석방 일반 요건에 따라 “그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인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가석방 결정 시 수형자의 인격·전력, 범죄상황, 재범 시 위협되는 법익의 무게, 행형 태도, 생활 태도 및 가석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석방의 요건으로 “일반 시민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일 것과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⁴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⁴¹⁾

	신청요건 및 결격사유	특별감형신청 필요기간이 경과하고, 형사사건 수사·공판 중이 아니어야 함.
	상소 및 재신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상소를 허용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국가가 불복할 수 없도록 하며, 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상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특별감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변호인 선임	변호인선임권을 인정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함.

38) 현행 무기징역형은 법률상 감경이 가능하고, 일률적으로 10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하고 개선(改悛)의 정이 있으면 행정처분인 가석방에 의해 사회로 복귀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상대적 종신형은 일률적으로 10년 등의 복역기간을 가석방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범죄자의 잔여(殘餘) 수명의 일정 부분(예:2/3) 경과 등을 요건으로 하는 등 가석방을 위한 복역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가석방 역시 현행 행정처분이 아닌 형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점 등에서 무기징역형과 상대적 종신형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이승준, 앞의 논문, p.145)

39) 2018. 4. 26.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40)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86, 288, 314.)는 통상의 살인사건(Mord)에서 인정되는 책임을 기초책임(Basisschuld)으로 보고 종신형 가석방에서 의미하는 특별히 중한 책임은 이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책임으로 판단하였으나, 독일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BGHSt. 40, 360, 370.)는 개별적 사안에서 종합적 평가가 중요하고, 이때에 특히 실행행위에 대한 특별한 비난가능성, 다수의 피해자, 기타 사건과 별개로 행해진 중범죄의 존재 등 ‘행위상황의 엄중함(Umstande von Gewicht)’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함..(김정연·윤옥경·차종진·배상균,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79,180)

41) 「독일 형법」

제57조(유기자유형의 가석방)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기자유형의 잔형 집행을 유예한다.

1. 최소 2월 이상인 선고형의 3분의 2를 경과한 경우

4) 안 제3조는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로 「형법」에 따른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시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행형의 목적·이념과도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면법」에 따른 사면·감형·복권⁴²⁾도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인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⁴³⁾

2. 일반 시민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3.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동의한 경우

가석방을 결정할 때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전력, 범죄상황, 재범 시 위협되는 법익의 무게, 행형태도, 생활태도 및 가석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7조a(무기자유형의 가석방)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무기자유형의 간형 집행을 유예한다.

1. 15년을 복역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3. 제57조제1항제1문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제2문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2) 「사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既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43) 참고로 18대 국회에서 주성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종신형”을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 수용하며, 「형법」에 따른 가석방을 할 수 없고, 「사면법」에 따른 사면과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는 징역형”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다. 입법방식 및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3조 및 부칙 제3조)

1) 안 제3조는 「형법」 등의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안 부칙 제3조는 「형법」 제66조⁴⁴⁾ 등 8개 법률의 사형 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2) 사형 폐지를 위한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안 제3조에서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⁴⁵⁾ 「형법」이 형사법의 기본법으로서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⁴⁶⁾ 사형 폐지의 입법 방식으로 「형법」과 개별 특별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또는 원안과 같은 사형 폐지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3조에서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서 사형 집행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나, 「형법」 및 형사특별법 상 개별 범죄의 법정형 개정 없이 안 제3조 및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별법이 규정한 사형의 구형·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 상 개별 법정형의 정비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44)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45) ① 프랑스는 안 제3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② 독일은 기본법 규정으로, ③ 영국은 개별 형벌 규정 개정 방식으로 사형을 폐지하였음.

46)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 9. (생략)

4. 종합의견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현재 전 세계 3분의 2를 넘는 국가가 사형제 폐지국가(실질적 사형폐지국 포함)로 분류되고 있고, 일본·미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 OECD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음.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제정안은 생명권을 보장하고,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되나, 사형제도 존폐는 오랜 기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찬반론의 각각의 논거, 국민의 법 감정, 형사정책적 고려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또한, 사형제도 폐지 시 그 대체 형벌 도입의 경우 절대적 종신형 또는 상대적 종신형을 택할 것인지, 절대적 종신형을 택할 경우 사면 등은 허용할 것인지 나아가 상대적 종신형을 택하는 경우 가석방 요건이나 최소 복역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과 법감정, 정책적 필요성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한 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056